



의안번호	제 2019 - 2호
보 고 연 월 일	2020. 1. 6. (제99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1
1. 제130차 전체회의	1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1
II. 업무추진 일정 변경안 검토 결과	2
1. 검토배경	2
2. 업무 추진 수정안	3
III.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양형인자 등)	5
1. 대유형1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5
2. 대유형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검토 결과	16
3. 대유형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검토 결과	17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17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형량범위, 양형인자 등)	19
1. 대유형3 교통사고 후 도주의 형량범위 검토 결과	19
2. 대유형1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25
3. 대유형2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26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30
V.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31
1. 형량범위	31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32
3. 기타	32
VI. 향후 일정	33

【별첨】

- 최승원,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정초아,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등)”
 - 김호용, “교통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검토”
 - 김춘수, 장일희,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 최승원,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회신 검토”
-

I. 전문위원 회의

1. 제130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9. 12. 23.(월) 14:00~18: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장일희,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범헌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관한 수정 의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추가]에 따른 업무추진 일정 변경
- 균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수정방안(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검토

2. 전문위원 연구반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20. 1. 2.(목) 10:00~12:00

○ 장소 : 대법원 464호 회의실

나. 참석자(6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호용, 장일희,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양형기준 해설 제3차 수정 초고 검토

II. 업무추진 일정 변경안 검토 결과

1. 검토 배경

○ 2019. 12. 9. 열린 양형위원회 제98차 정기회의에서는 제7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추가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요청 등을 감안

-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을 설정할 구체적 범위는 전문위원단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카메라 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함('2020. 7. 1.'로 예정)

○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9. 6. 10. 열린 제95차 정기회의에서 보고된 업무추진 일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업무 추진 수정안

가. 업무별 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①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양형기준 설정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 설정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		○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
②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군형법상 성범죄 추가)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
③ 양형기준 해설 수정	○	
④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 설정의 경우 원래 ① 상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을, ② 하반기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설정할 예정이었음.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가 추가되고 그 예정 시행일이 2020. 7. 1.인 사정을 감안하여 ① 하반기 전반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② 하반기 후반부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으로 수정
- 나머지 업무는 추진 시기는 변동이 없으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회의 일정, 안건 등을 조정함

※ 참고자료 : 운영지원단 작성 세부 일정안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19.5.13(94차)	출범식
19.6.3.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19.5.20.(125차)	19.6.10.(95차)	7기 수정 및 설정 범죄 선정
19.8.26.(126차)	19.9.9.(96차)	카메라등 양형기준안, 군형법상 성범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19.9.30.(127차) 19.10.7.(128차)	19.10.25. 워크숍(97차)	카메라등 양형기준안, 군형법상 성범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형량범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19.11.25.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19.11.11.(129차)	19.12.9.(98차)	카메라등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점유 기준)
19.12.23.(130차)	20.1.6. (99차)	아청법 음란물(일정 확정), 군형법상 성범죄 /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인자, 점유기준),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확정,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20.2.3.(131차)	20.2.17.(100차)	아청법 음란물(유형분류)
20.3.9.(132차)	20.3.23. (101차)	군형법상 성범죄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양형기준 해설 수정안 확정
20.4.6. (133차)	20.4.20. (102차)	아청법 음란물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점유기준), 카메라등/아청법 음란물 양형기준안 확정
20.5.18.	공청회(카메라등/아청법 음란물 양형기준안)	
20.6.1.(134차)	20.6.15. (103차)	카메라등/아청법 음란물 양형기준 최종 의결, 마약범죄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마약범죄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20.6.29.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20.8.24. (135차)	20.9.7. (104차)	마약범죄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심의(1)

20.10.5. (136차)	20.10.23. 워크숍 (105차)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심의(2)
20.11.9. (137차)	20.12.7. (106차)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양형인자, 점유기준)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심의(3)
20.11.23.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20.12.21. (138차)	21.1.11. (107차)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확정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확정
21.2.8.	공청회(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21.3.15. (139차)	21.3.29. (108차)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안 최종 의결

Ⅲ.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양형인자 등)

1. 대유형1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96차,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 및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마.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 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나.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단순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가) 특별감경인자

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으나 장애인 대상/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유사성의 측면에서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②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기존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③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법상 성범죄를 성범죄 양형기준의 서술식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

- 2018 양형기준 책자의 29쪽 하단에 있는 서술식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다음에 “균형법상 성범죄,”를 추가

④ 자수

- 대부분의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⑤ 처벌불원

- 처벌불원은 개인적 범익을 보호범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가 일괄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종전 양형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함이 바람직함

(나) 특별가중인자

- 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임신(3유형) / 상습 범인 경우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통일성 유지

- ②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③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균형법상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가 군인 또는 준군인으로 한정되어 특정강력범죄(누범)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다만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나 균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함

(다) 일반감경인자

- ①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감경인자(행위)로 반영
- 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

(라) 일반가중인자

- ①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가중인자(행위)로 반영
- ②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기존 성범죄 중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예에 따라 3유형(군인등강간)에 한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③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가중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
- 다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은 균형법상 성범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제외함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농아자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제1 의견(6인)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

- 균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농아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형법 제11조는 농아자를 필요적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유독 균형법상 성범죄에 한하여 '농아자'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고 체제의 정합성도 해치게 됨

② 제2 의견(6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농아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균형법상 성범죄의 주체가 될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고,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더라도 법관은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농아자를 필요적 형의 감경 사유로 규정한 현행 형법에 대한 학계의 개정 의견을 반영할 필요 있음

(나)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별개의 양형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9인)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포섭

- 별개 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도 해당하여 양형인자의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② 소수 의견(3인) :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균형법상 성범죄의 보호법익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별도로 가중처벌함이 타당함

- 별개 양형인자 반영 여부에 관한 다수 의견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① 제1 의견(5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내 계급 또는 지휘관계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제1 의견은 균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예를 들어 사병 사이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급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했던 경우에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② 제2 의견(4인)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균형법 제2조 제1호의 상관을 의미한다)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

- 제2 의견은 가해자를 균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상관으로 한정하면서 정의 규정에서 별도의 예시로 제시하여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취지임

1) 밑줄 그은 부분은 기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추가되는 부분임. 이하 같음.

③ 제3 의견(2인)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하거나 범행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

- 제3 의견은 가해자를 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상관(순정상관)으로 제한하여 제2 의견보다 더 좁게 적용 범위를 정하려는 취지임
- 한편, 제3 의견은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예시로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제1, 2 의견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됨

④ 제4 의견(1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내 명령복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제4 의견은 제1 의견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면서 '군대 내 계급 또는 지휘관계'라는 표현을 군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명령복종관계'로 대체하는 취지임

- 한편, 별개 양형인자 반영 여부에 관한 소수 의견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하여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뉘

① 다수 의견(7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하거나 범행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수 의견은 가해자를 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순정상관으로 한정하면서도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범행 후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형을 가중하는 취지임

② 소수 의견(5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의 상관을 의미한다)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소수 의견은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면서도(다른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통하여 형을 가중), 가해자를 순정상관뿐 아니라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단에 규정된 준상관까지 포함하는 취지임

(다)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7인) : 일반가중인자에서 제외

-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없음

② 소수 의견(5인)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

- 해당 사안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존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라) 단순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

- 특별가중인자 부분에서 보고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에 대한 논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임

① 다수 의견(9인) : 일반가중인자에서 제외

- 피해자의 관점에서 가해자가 균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순정상관인 경우와 후단에 규정된 준상관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특별가중인자로, 후자는 일반가중인자로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도록 함이 타당함

② 소수 의견(3인)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

- 균형법상 성범죄의 보호법익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되, 순정상관인 경우와 차등을 두어 단순상급자의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에 관하여 소수 의견 채택될 경우를 가정한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은 제외한다)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하거나 범행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 경우 양형인자의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가증인자 부분에서 언급되는 상관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순정상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마)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가증인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7인) : 일반가증인자에서 제외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다른 양형인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가증인자로 별도 반영할 필요가 없음

② 소수 의견(5인) : 일반가증인자에 포함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양형요소로서 기존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2. 대유형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96차,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 및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다. 균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 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기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균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구체적 방식은 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처럼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거나 ② 아래와 같이 별도의 양형인자표를 제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경미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중한 상해

일반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대유형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균형법상 성범죄를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기존 성범죄 중 대유형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의견을 모음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균형법상 성범죄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기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중유형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기존 양형인자를 대부분 활용하였고, 균형법상 성범죄에 특유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찾기 어려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운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 피고인이 고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V.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형량범위, 양형인자 등)²⁾

1. 대유형3 교통사고 후 도주의 형량범위 검토 결과

가. 검토 배경

- 전문위원단의 1차 검토 결과 대유형3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정형이 변경되지 않아 형량범위 수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함
- 2019. 10. 25. 열린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대유형2(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를 전문위원단의 다수 의견보다 다소 높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와 법정형이 유사하거나 높은 대유형3(교통사고 후 도주)의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도록 요청

나. 대유형2와 대유형3의 법정형 비교

2)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2019. 12. 10. 국회를 통과하여 12. 17. 공포되었으므로(시행은 공포 3개월 후),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비고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제5조의11 전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 변경됨
위험운전치사	특가법 제5조의11 후문	1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법정형 변경됨
치상 후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 변경 없음
치상 후 유기도주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법정형 변경 없음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정형 변경 없음
치사 후 유기도주 또는 도주 후 유기치사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정형 변경 없음

다. 대유형2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결과

단위: 명, %

유형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2	24	30	36	42	48	54	60			72	84	
제1 유형	감경	수	3	1019	15	1,020	23	613	580	15	1	2	40	1	-	2	-	-	-	-	-	-	-	-	3334	862	
		비율	01	306	04	306	07	184	174	04	00	01	12	00	-	01	-	-	-	-	-	-	-	-	-		-
	기본	수	-	131	1	774	21	605	785	58	1	21	127	1	2	20	5	-	-	-	-	-	-	-	-	2552	1050
		비율	-	51	00	303	08	237	308	23	00	08	50	00	01	08	02	-	-	-	-	-	-	-	-	-	
	가중	수	-	8	-	36	-	52	231	17	2	5	86	-	1	29	2	-	-	-	-	1	-	-	-	470	1352
		비율	-	17	-	77	-	111	491	36	04	11	183	-	02	62	04	-	-	-	-	02	-	-	-	-	
	소계	수	3	1158	16	1,830	44	1,270	1,596	90	4	28	253	2	3	51	7	-	-	-	1	-	-	-	6356	974	
		비율	00	182	03	288	07	200	251	14	01	04	40	00	00	08	01	-	-	-	00	-	-	-	1000		
제3 유형	감경	수	-	-	-	-	-	-	-	1	-	7	1	-	9	104	37	4	-	-	2	-	-	165	3101		
		비율	-	-	-	-	-	-	-	06	-	42	06	-	55	680	224	24	-	-	12	-	-	1000			
	기본	수	-	-	-	-	-	-	-	-	-	-	-	-	-	15	32	6	11	1	5	1	-	71	3955		
		비율	-	-	-	-	-	-	-	-	-	-	-	-	-	211	451	85	155	14	70	14	-	1000			
	가중	수	-	-	-	-	-	-	-	-	-	-	-	-	-	-	1	1	8	3	7	8	1	29	5876		
		비율	-	-	-	-	-	-	-	-	-	-	-	-	-	-	34	34	276	103	241	276	34	1000			
	소계	수	-	-	-	-	-	-	-	1	-	7	1	-	9	119	70	11	19	4	14	9	1	265	3634		
		비율	-	-	-	-	-	-	-	04	-	26	04	-	34	449	264	42	72	15	53	34	04	1000			
제4 유형	감경	수	-	-	-	-	-	-	-	-	-	-	-	-	-	-	-	-	1	-	-	-	-	1	4800		
		비율	-	-	-	-	-	-	-	-	-	-	-	-	-	-	-	-	-	1000	-	-	-	-		1000	
	기본	수	-	-	-	-	-	-	-	-	-	-	-	-	-	-	-	-	1	-	-	-	-	1	4800		
		비율	-	-	-	-	-	-	-	-	-	-	-	-	-	-	-	-	-	1000	-	-	-	-		1000	
소계	수	-	-	-	-	-	-	-	-	-	-	-	-	-	-	-	-	2	-	-	-	-	2	4800			
	비율	-	-	-	-	-	-	-	-	-	-	-	-	-	-	-	-	-	1000	-	-	-	-		1000		

단위: 명, %

유형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2	24	30	36	42	48			54	60	72
전체	수	3	1,158	16	1,830	44	1,270	1,596	90	5	28	260	3	3	60	126	70	11	21	5	14	9	1	6,623	1081
	비율	00	17.5	0.2	27.6	0.7	19.2	24.1	1.4	0.1	0.4	3.9	0.0	0.0	0.9	1.9	1.1	0.2	0.3	0.1	0.2	0.1	0.0	100.0	

○ 소유형1(치상후 도주)

-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6월(집행유예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건이 각각 30.6%로 나타남(합계 61.2%)
-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8월이 선고된 사건이 30.3%,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건이 23.7%,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 30.8%로 나타남
-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 49.1%로 가장 많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 18.3%로 나타남
- 감경영역 준수율은 98.2%, 기본영역 준수율은 93.8%, 가중영역 준수율은 79.3%임

○ 소유형2(치상 후 유기 도주)

- 해당 조사 기간 중 선고된 사례가 없음

○ 소유형3(치사 후 도주)

-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 63%로 가장 많고,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22.4%로 나타남
-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45.1%,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 21.1%,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이 15.5%로 나타남
-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징역 4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된 사건이 각각 27.6%로 가장 많고,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이 24.1%로 나타남

- 감경영역 준수율은 87.9%, 기본영역 준수율은 77.5%, 가중영역 준수율은 89.8%임
- 소유형4(치사 후 도주 유기)
 -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 각각 1건씩 조사되었고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됨
 -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은 없음

라. 형량범위 검토 결과

(1) 다수 의견(9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1년 1년6월	8월-1년6월 2년6월	1년-3년 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8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5년	4년-6년	5년-8년 10년

- 소유형1(치상 후 도주)의 경우 감경/기본/가중 영역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 조정
 - 소유형1은 위험운전치상죄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동일하므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양형자료조사 결과 감경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30.6%, 기본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8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30.3%, 가중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비율이 49.1%로 나타남.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양형실무와 괴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존재함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안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매우 다양한 행위태양이 존재하므로, 법정형의 변경이 없는 이상 현행 하한을 유지하면서 상향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중영역에 해당함. 따라서 위험운전 치상과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역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 3(치사 후 도주), 4(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가중영역에 한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상향 조정
 - 위험운전 치상의 가중영역 상한이 5년, 위험운전 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이 8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유형2~4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양형자료 조사 결과 소유형2~4 중 빈도 수가 가장 많은 소유형3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비율이 63%, 기본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비율이 45.1%, 가중 영역에서 현행 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비율이 27.6%로 나타남.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양형실무와 괴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존재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중영역에 해당함. 따라서 위험운전 치사상과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역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제1 소수 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1년 ⇒1년-2년	8월-1년6월 ⇒1년6월-3년	1년-3년 ⇒2년6월-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년-10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5년	4년-6년8년	5년-8년 ⇒6년-15년

- 위험운전치상/치사 범죄가 도주치상/치사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음에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는 전 구간에 걸쳐 더 높게 설정되어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소유형1(치상 후 도주)의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의 가중 영역 상한을 상향
 - 소유형1(치상 후 도주)의 경우 전 구간에서 위험운전치상 유형 보다는 높게 설정하되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 보다는 법정형이 낮으므로 그에 맞게 감경영역은 '1년-2년', 기본영역은 '1년6월-3년', 가중영역은 '2년6월-5년'으로 상향
 - 이 경우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의 법정형이 소유형1(치상 후 도주)보다 높음에도 가중 영역 상한이 소유형1(치상 후 도주)과 동일하게 되므로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의 가중영역 상한을 수정된 소유형1(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 상한보다 높은 7년으로 상향
- 소유형3, 4의 가중영역, 소유형4의 기본영역 상한을 상향함
 - 소유형3(치사 후 도주)의 법정형이 소유형2(치상 후 유기도주)보다 높음에도 가중영역 상한이 낮아지게 되므로 가중 영역을 '5년-10년'으로 상향
 - 소유형4(치사 후 유기도주)의 법정형이 소유형3(치사 후 도주)보다 높음에도 가중 영역 상한이 낮아지게 되므로 가중 영역을

‘6년-15년’으로 상향하고, 기본 영역을 이에 맞추어 ‘4년-8년’으로 상향

(3) 제2 소수 의견(1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1년 1년6월	8월-1년6월 2년6월	1년-3년5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8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5년	4년-6년	5년-8년

- 소유형2, 4는 법정형 변동이 없고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범위보다 대체로 높아 형량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적으며,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감경 영역, 기본 영역의 준수율이 높은 반면 가중 영역의 이탈율이 높은 추세여서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소유형 1, 3에 대한 형량범위안은 다수 의견과 같음

2. 대유형1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므로, 대유형1(일반 교통사고)의 기존 양형인자 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대유형2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96차,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 및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나. 양형인자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u>○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u> <u>○ 다수의 피해자 발생</u>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u>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위반범죄 포함)</u>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 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전과(<u>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위반범죄 포함</u>)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대유형2로 별도 분류하기 이전에 위험운
전치사상죄에 적용된 양형인자이므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음주운전 등의 양형 반영

- 기존의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삭제하는 대신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나뉨

① 다수 의견(8인) :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삭제

-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음주 등
으로 인한 위험운전에 대하여 가중된 권고 형량범위를 설
정하였는데도 음주운전 등을 가중인자로 다시 반영하게 되

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② 소수 의견(4인) :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 대체

- 현재 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인자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험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 특별가중인자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10인) :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다른 양형인자가 없으면 바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하한과 상한이 모두 가중됨. 그런데 실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만 1/2을 합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중됨. 이에 따라 과형상 1죄인 상상적 경합을 실제적 경합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문제가 발생함
- 다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1회의 범행인데도 피해자 수가 다르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특별 가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유독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대유형1, 3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고 체계적 정합성을 해하게 됨

②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

- 현재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특별한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타당
-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1유형),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2유형)라는 정의 규정을 둬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다) 동종 누범

① 다수 의견(9인)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으로 수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종 누범에 성범죄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동종 누범의 범위를 넓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누범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범죄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음주 등 운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함
- 벌금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이기만 하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전과의 반영 정도가 책임에 비례하지 않아 불합리한 양형에 이를 수 있음

※ 다수 의견은 일반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도 같은 방법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임. 아울러 대유형2의 동종 전과 개념을 달리하므로 기존 '동종 전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함³⁾

자. 동종 전과(위험운전 교통사고 제외)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② 소수 의견(3인)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현재 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인자로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 중 불법성이 높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3) 다수 의견을 제안한 주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 결과임.

함이 타당함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다수 피해자 발생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만 의견이 나뉨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 중 해당 부분과 동일함

V.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1. 형량범위

가. 의견조회 결과 요지

- ① 선거범죄 일부 유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를 때 법정형에 포함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대한변호사 협회)
 - 예컨대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중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은 법정형 상한이 1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인데 양형기준에 벌금형 상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음
 - 특히 감경 또는 기본영역에만 벌금형이 규정됨으로써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특별가중을 할 수 없고, 징역형을 함께 권고하면서 그보다 경한 일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② 법정형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음(대한변호사 협회)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의 제2유형에 포함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법정형 상한이 3천만 원임에도 벌금형 법정형 상한이 각각 600만 원, 1천만 원인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함

나. 논의 결과

- (1) 일부 유형의 경우 법정형에 포함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견 → **현행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처단형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
 - 2012년에 양형기준 최초 설정 당시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 행위 금지·제한 위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 일부 유형의 경우 엄정한 양형을 위하여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규범적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2) 법정형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현행안 유지(의견 일치)**

- 법정형이 권고 형량범위 설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
고 죄질, 실제 선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
량범위를 정하게 됨
- 양형기준 수정안은 앞서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동일
한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이 적합한 수개의 범죄가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되도록 하는 유형분류 절차를 거쳐 설정됨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회신 내용 없음**

3. 기타 ⇨ **오기 정정(의견 일치)**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각각 포섭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음에도 ‘유형
의 정의’ 부분에는 위 각 죄가 여전히 1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잘
못 표시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대한변호사협회)
- 수정안 작성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이므로, 수정한 유형분류에 따
라 유형의 정의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VI. 향후 일정

- 일시 : 2020. 1. 30.(목) 16:00 ~
- 장소 :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안건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유형 분류 방안 검토